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7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의원)

현행법 제20조제1항은 가축 소유자에게 가축전염병 확진 후 살처분을 명하는 일반적 살처분과 가축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믿을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을 경우 일정 범위에 있는 가축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도록 명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축의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하면서 ‘병성감정’이란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는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하여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유예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가. 예방적 살처분의 명시적 구분 및 유예사유 확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한편,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유예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일반적 살처분 명령과 예방적 살처분 명령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경우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유예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제20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28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i) 제20조제1항 본문과 이를 준용하는 제28조는 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일반적 살처분 명령 제도),

ii)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우역·우폐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

으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

또한 현행법은 가축 소유자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가축 소유자의 신원·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살처분을 명령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격리장소에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살처분 명령 제도를 i)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의 명령 근거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ii)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의 경우 유예사유를 확대하여 기존의 병성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인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두 가지 형태의 살처분 명령 제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예방적 살처분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사전에 신속하게 제거하는 초동방역조치로서, 발생 초기에 추가적인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생각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 대상으로 하여 가축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고, 살처분을 집행한 가축 소유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트라우마 등 정신적 부담을 가저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종식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사전에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간 예방적 살처분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비용 등을 지원하여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신중하게 명령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유예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고,

특히, 개정안에서 확대하고 있는 유예사유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른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방역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개정안은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근거조항을 분리하면서 현행 범상 명령 대상지역 중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멧돼지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도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대상지역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